

로 위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공정 및 배합사료제조업 시설기준 등에 법적근거가 없는 "프리믹스사료"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며 개정(안)으로서 지난 사료관리법 입법예고시 법 정의에 "프리믹스사료"의 정의를 신설코자 했다가 관련업계의 반대와 법적근거 부족으로 정의를 신설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령에 이를 삭제하지 않고 명문화하는 것은 취급자의 혼선은 물론 여러 가지 법적문제 제거의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야 함.

5) 사료에 첨가되는 아미노산제 등의 성분표시 별도 규정

○ 사료성분 등록 및 표시사항 기재시 주요 성분과 성분량을 백분비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적정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료제조시 사용된 원료·첨가제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혼합·사용된 량을 단위기준에 의하여 명확히 기재토록하여 사료품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료 최종 소비자인 양축농가로 하여금 그 표시사항을 통하여 더욱 품질 좋은 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동물약품중 미량 첨가제되는 영양 사료첨가제의 경우 사료에 혼합되었을 경우 그 성분이 국내 성분과 동일하여 사후검사 등을 통한 적정 혼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 검사시 관련장부 확인을 통한 적정 품질관리 상태 확인을 위하여 구체적인 성분명과 혼합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나. 표시방법 (4)항의 "위 사용원료는 공장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료원료 수급상 변경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에 의한 성분등록 내용 및 표시사항과 달리 제품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규정내용은 삭제되어야 하며, 고품질 사료 생산을 위하여 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할 것임.**

6)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규정 신설

○ 사료관리법 개정시 유해세균 및 곰팡이 독소 등 사료중의 유해물질 혼입을 방지하고 적정 품질관리와 안전한 사료 생산을 통하여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법 개정 내용이 "사료안전관리인" 제도와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도입부분이었으나,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동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있는 바,

○ 국내 축산식품의 위생도 향상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향적으로 개정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업계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이를 시행치 못하고 국민과 약속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료사료업체에서 완제품 사료 제조업을 대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動物藥界

□ 新規 兵役特例 指定業體 選定願書 提出

병역법 관계법규 개정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이 병역특례업종(기간산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도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20개 업체 21개 사업장의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 지정업체 선정원서 제출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고려케미칼	송기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33-2
과학사료	신정재	경기 안산시 원시동 817-4
녹십자수의약품	김승목	경기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227-5
대성미생물	조항원	경기 의왕시 삼동 293
대한뉴팜	이완진	경기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904-3
삼양약화학	민경우	경기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442-10
서울신약	김충정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64-5
성원	이용남	인천시 서구 마전동 625-4
승화	백연수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36-2
신일화학	홍완표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4-10
유니바이오테크	정석희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3
이글벳	강승조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46
이화약품	이정협	인천시 서구 금곡동 산 237-1
제일바이오	심광경	경기 안산시 목내동 456-2
중앙바이오텍	김우진	경기 안산시 원시동 833-6
진우약품	조훈영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4-9
코린화학	윤병성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55
코파켄스패셜	이충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182-9
한국미생물	양용진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36-6
한동	이원규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472-2
한동	이원규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7

□ 動物藥事監視 行政處分 結果 弘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경상북도·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동물약사 감시 수거검사와 항생물질 신규허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 4개 업체 5품목이 성분함량 부적합 및 제조번호·유효기간 미기재로 적발되어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소 아까바네병 豫防藥 追加 支援

농림부는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 아까바네병 예방접종이 미흡한 지역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중부이남 지역에 소 아까바네병 예방약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추가 지원물량 : 25,000두분
- 지원금액 : 국비 87,500,000원
 - 산출근거 : 25,000두 × 3,500원
 - 예방접종 시술비는 지방비에서 부담
- 지원지역 :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 지원기준
 - 2001년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50% 미만 지역
 - 시도별 가임양소 두수 및 2001년도 방역사업물량 비율
- 접종지원 대상 :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가임양소에 접종

□ 施設改善事業 細部事業計劃 承認

지난 7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일부 변경 및 업체별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시설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과학사료 등 10개 업체이며, 총 융자신청 금액은 32억 9천만원이다. 해당업체는 사업시행 세부요령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 신청은 기성고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口蹄疫 白書 發刊

농림부에서는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농림관련 공무원 모두가 구제역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제역 발생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의 발생경위와 방역조치 및 농가지원대책의 추진내용과 배경, 재발방지대책 등을 기록한 구제역백서를 발간하였다.

韓國動物藥品 30年史 原稿 募集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 동물약품산업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자 “한국 동물약품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원고를 정략 받으신 집필자 및 회원사께서는 8월 31일까지 원고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E-mail : hot006@chollian.net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

소 기립불능증

● 발생 원인

- ▶ 고온다습, 열악한 사육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 ▶ 비타민·미량광물질 등 영양불균형
- ▶ 기립불능 증세를 보이는 질병의 감염
- ▶ 대사성장애 등에 의한 신경이상 증세로 판단

● 예방 요령

- ▶ 유행열 등 모기관련 전염병의 예방접종 철저
- ▶ 축사주변 소독, 농장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 발생시 대처 요령

- ▶ 다리마비 등 이상증세 발생시 개업수의사 진료 요청
- ▶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타민B복합제, 칼슘제, 대사촉진제, 소염제, 항생제, 식염수 등을 지속 투여
- ▶ 주변을 청소, 소독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

※ 기립불능증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매일 주의깊게 임상관찰을 하여야 하며 특히 뒷다리 등의 거동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함

열사병

● 예방 요령

- ▶ 그늘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축체에 찬물을 뿌려 줌
- ▶ 축사내부가 통풍이 잘 되도록 환풍기 설치 가동
- ▶ 축사에 단열재 설치

● 치료 및 방역 요령

- ▶ 발생시 시원한 곳에서 안정시키고, 충분한 수액과 영양제 투여

아까바네병, 소유행열, 퇴지일본뇌염

● 예방 요령

- ▶ 예방접종 철저
- ▶ 축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
- ▶ 축사 주위의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하여 모기 방제

● 치료 및 방역 요령

- ▶ 의심가축 발견시 개업수의사에게 진료요청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 수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환축에 영양제 및 수액·소금 등 공급. 필요시 예방접종 추가 실시